

제3자 배임수재죄 신설 형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민간 부문 부패 단속 강화

1. 제3자 배임수증재죄 신설 배경 및 논의 경과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등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처벌하고 그 재물 등을 몰수할 수 있도록 형법상 제3자 배임수재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개정안이 2016. 5. 19.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현행 형법상 배임수재죄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한 경우 처벌할 수 없습니다(뇌물죄의 경우에는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한 경우에도 처벌하는 '제3자 뇌물제공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국가 경제에 있어 민간분야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그 부패가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분야의 부패행위를 규제하는 배임수재죄의 경우에는 오로지 본인이 금품을 받은 경우에만 처벌하고 있어 민간분야의 부패행위를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2015. 11. 5. 제3자 배임수재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국회는 논의 끝에 정부의 개정안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는 이유로 원안을 가결하였습니다.

2. 제3자 배임수증재죄 개정 내용

개정안은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도 배임수증재로 처벌하도록 배임수재죄의 구성요건을 정비하고, ② 그 제3자가 배임수재의 정을 알고 취득한 경우에는 그 제3자가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제3자 배임수증재죄 신설의 의미

우리나라가 2008. 4. 26. 비준한 'UN 부패방지협약'은 민간부문의 부패 방지 의무와 관련하여, 직무 위반 행위를 조건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위한 부당한 이익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는 행위를 범죄로 하는 입법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분야의 부패행위를 방지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본인이 직접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배임수증죄의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였는바, 이번 제3자 배임수증죄의 신설에 따라 위와 같은 'UN 부패방지협약'의 권고사항으로서 민간분야의 부패 방지에 관한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제3자 배임수증죄의 신설로 앞으로 민간 부문 부패 단속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종전에는 묵인되었던 부정한 청탁을 수반한 제3자에 대한 금품 제공행위에 대하여 처벌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참고 - 현행 형법상 제3자 금품 제공에 대한 배임수증죄 성립 조건

현행 형법 하에서 대법원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은 자가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 배임수증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 배임수증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법문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하더라도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음이 명백하고, 다만 사회통념상 그 다른 사람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받은 것을 부정한 청탁을 받은 자가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위 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도2581 판결 참조).

이번 형법 개정을 통해 제3자 배임수증죄가 신설됨으로 인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은 자가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외에도 위 2.항과 같은 요건하에서 광범위하게 배임수증죄가 성립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 | |
|--------------|------------------|----------------------------|
| ● 변옥숙 파트너변호사 | TEL. 02 316 4382 | E-Mail. osbyun@shinkim.com |
| ● 이용성 파트너변호사 | TEL. 02 316 4028 | E-Mail. ysulee@shinkim.com |